

-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2006.12.14( 목 )

제255회 정례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충청북도 정례회

○ 2006. 12. 14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심상결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## 나 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,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자문기능 수행(안 제3조)
- 위원은 20명(공무원, 민간인, 기업인 등)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함(안 제4조)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(안 제5조)
-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안 제7조)
-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8조)
-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: 김재준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환경분야의 주요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

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제21를 추진토록 한바 있으며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 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, 경기도, 대전광역시 역시 동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·운영중인 충청북도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본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 되어 각 위원회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##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지속가능발전”이라 함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 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2.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

**제4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으로 경제통상국장·복지환경국장·농정국장·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, 기업인 등 학식

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 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 (심의 안건 및 처리)**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.

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**제10조 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**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수당 등)**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5조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(대통령령 제19563호)

제18조(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